

工業所有權國際機構加入과 技術開發



崔 春 彦
 <KIST技術情報室長 理博>

1 序 言

1977년에 100億弗輸出을 突破한 우리나라는 去年에는 137億4千萬弗의 輸出을 達成하였고 交易對象國도 130餘個 國家와 地域으로 擴大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經濟活動, 技術活動이 많은 동안에 國際社會에서 餘他國家들과 正面으로 協力 또는 競爭을 하지 않을수 없는 時期에 到達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特許를 비롯한 工業所有權이 産業生産과 市場開拓, 技術開發에 있어서 매우 重要的 役割을 하게 된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므로 公業소유권이 上記分野에서 우리 國家, 社會에게 有用하게 運用되어야 하는 것은 當然하지만 世界가 하나의 經濟圈, 生活圈으로 되어가고 있는 趨勢에 비추어 보아서 이 制度만이 尤도 國際化를 外面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도리어 公業소유권의 국제화로 얻을 수 있는 利點을 十分活用하여 産業生産과 市場을 擴大시키고 技術開發力을 強化시키는 積極的인 姿勢와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今年 3月 1日에 發效가 예상되는 世界知的의 所有權機構(WIPO) 加入은 새로운 契機를 마련하는 것 이라고 하겠다.

2 우리나라의 特許現況

工業所有權中에서 기술개발과 가장 관계가 깊은 特許 및 實用新案에 對한 最近의 出願 및 登錄狀況을 主要外國과 比較해보면 表 1과 같은데 우리는 이 現況에서 여러가지 意味와 問題點을 導出할 수 있다.

첫째로 先進諸國의 출원이 量的으로 매우 많다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日本의 國內出願量은 美國의 5倍에 肉迫하고 있다. 質的인 面에서는 外國出願特許가 水準이 높은 것이 常例인데 美, 英, 西獨, 프랑스, 日本은 年間 25,000~40,000件의 特許를 外國에 출원하여 權利를 確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特許出願은 그 絕對件數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外國出願은 우리보다 經濟發展이 뒤지고 있는 印度에 比較해서도 零細하다. 이는 우리의 技術水準과 함께 特許에 대한 關心不足에서 온 結果라고

<表 1> 主要國의 特許出願 및 登錄現況(1976)

國 家 別	出 願			登 錄			%	
	對自國 (A)	對外國 (B)	小 計	對自國 (a)	對外國 (b)	小 計	a/A	b/a
美 國	65,050	37,294	102,344	44,162	26,074	70,236	67.9	59.0
英 國	21,797	32,764	54,561	8,855	30,942	39,797	40.3	349.4
西 獨	72,174	30,640	102,814	23,991	10,570	34,561	33.2	44.1
프 랑 스	11,471	28,419	39,890	8,420	21,334	29,754	73.4	253.4
日 本	314,604	25,254	339,858	73,967	7,852	81,819	23.5	10.6
스 위 스	5,693	10,820	16,513	3,482	8,818	12,300	61.2	253.2
네 덜 란 드	1,857	12,782	14,639	370	3,219	3,589	19.9	870.0
印 度	1,324	1,769	3,093	433	2,062	2,495	32.7	600.9
韓 國	9,553	71	9,624	1,297	4	1,301	13.6	0.3

資料: 韓國特許協會, 國際工業所有權情報(1978. 3)

註: 特許 및 實用新案만을 集計하였음.

<表 2>

우리나라의 內外國人別 出願 및 登錄實績

區分	權 利 別	1975		1976		1977		1978. 9 現在	
		內 國 人	外 國 人	內 國 人	外 國 人	內 國 人	外 國 人	內 國 人	外 國 人
出 願	特 許	855	322	1,436	1,825	1,177	1,962	780	2,211
	實 用 新 案	3,585	9	8,117	261	7,199	402	4,771	319
登 錄	特 許	272	156	191	288	104	170	97	169
	實 用 新 案	811	8	1,106	9	576		698	2

資料: 特許廳 및 特許協會

생각되는 重要한 問題點이다. 表 1의 統計가 1976年의 現況이고 보면 今後 2年이 지난 現在는 우리의 外國特許出願도 增加되었으리라 推測되지만 우리나라와 先進國과의 技術隔差에 대한 하나의 斷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

둘째는 國內出願特許의 출원 및 登錄件數의 관계에서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登錄率이 매우 낮다. 물론 어느 한때의 出願數와 登錄數와 登錄數를 가지고 등록율을 말할수는 없으나 등록율의 傾向으로서 볼수는 있다. 表中 스위스를 除外하면 모두가 審査主義制度를 갖는 國家이므로 制度에서 오는 條件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등록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두가지 側面에서 問題가 提起될수 있다.

하나는 出願特許의 質이고, 다른 하나는 特許廳의 處理能力이다. 1978年의 實績을 보아도 9月末 現在 內國人的 國內出願은 特許, 實用新案을 합쳐서 5,551件이고 등록은 795件이므로 出願對登錄比率는 如前히 낮은 14%이다.

한편 外國人에 의한 우리나라 특허출원을 보면 繼續增加함과 同時에 內國人的 出願件數를 증가하고 있다 (表 2). 즉 특허제도의 惠澤을 外國人이 內國人 以上으로 받고 있는 것이 現實情이다. 오늘날 특허제도가 企業이나 國家間的 技術移轉에 있어서 效果의인 媒體役割을 하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1977年의 경우 外國人的 특허출원이 1,962件에 이르렀지만 外國技術의 導入件數는 170件에 不過하였고 또 우마나라의 技術導入中 特許關聯技術이 20%에도 未達된다는 實績을 勘案할때에 增加되는 外國의 特許技術攻勢에 대하여 慎重한 對策이 必要할 것이다.

③ 國際化에 따르는 問題點과 對策

이미 말한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工業所有權國際化의 첫 試圖로서 WIPO에 加入하였다. WIPO는 이미 1967年 7月 14日에 調印되고 1970年 4月 26日에 發效된 21個條로 된 世界知的 所有權機構設立協約(Convention of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의해 設立된 機構이다. 이 기구는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協約과 著作權保護를 위한 베른協約의 共同事務局으로 1893年 創設된바 있는 “知的所有權保護를 위한 國際事務局”(BIRPI)을 繼承한 기구이며 1974年에 UN의 專門機構로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를 包含시키면 現在 82個國이 가입된 기구이다.

WIPO는 設立協約 第3條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國家間的 協力을 통하여 또는 國際團體와 共同으로 世界를 통한 지적소유권의 保護를 促進하고 여러 同盟間的 事務的 協力을 保護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이 目的達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機能을 가지고 있다.

- 1) 세계를 통하여 지적소유권의 保護를 助長하며 이 分野에 있어서 國內法令의 調和를 圖謀하는 措置 開發의 促進
- 2) 파리同盟 및 이에 關聯하여 設立된 特別同盟과 베른同盟의 事務的 課題의 遂行
- 3) 지적소유권의 保護촉진을 도모하는 他 條約의 管理引受 또는 參與에 대한 同意權限의 行使
- 4) 지적소유권의 保護促進을 도모하는 國際協定締結의 獎勵
- 5) 知的所有權分野에서의 法的技術의 援助의 提供
- 6) 지적소유권보호에 관한 情報蒐集과 頒布, 研究推進과 研究成果의 公表
- 7) 지적소유권의 국제적보호를 助長하는 서어비스의 維持와 登錄에 관한 資料公表를 위한 準備
- 8) 其他의 適切한 措置講究

WIPO의 設立協約이나 지금까지의 活動을 分析해 볼때 WIPO의 가입은 所定の 負擔金 外에는 會員國家에게 義務賦課가 없으며 이 분야의 關聯公務員訓練, 資料交換, 情報提供, 開發途上國에 대한 各種 法的, 技術的 支援의 惠澤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입이 늦은 感마저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이런 國際機構에 가입한 안했을 뿐이지 實質的으로는 1955年 12月 1日에 發

效된 “大韓民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商標保護에 관한 協定”을 始發로 해서 1978年 12月 1日現在까지 16個國과 公업소유권에 관한 보호협정을 締結하였고 34個國과 互惠主義確證書를 交換함으로써 이미 公업소유권에 관한 국제화를 進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交易의 擴大에 따라 公업소유권보호를 目的으로 하는 國家間協력이 더욱더 增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그렇지만 一部에서는 WIPO가입으로 시작되는 國際化方向에 매우 批判的이기도 하다. 이것은 WIPO가입이 必然적으로 파리協約의 가입을 촉진시킬 것이며 파리협약가입은 우리나라 特許法을 歐美先進國과 같은 類型으로 轉換시키게 될 것이고 그 結果 工業所意權制度가 우리나라의 産業發展이나 技術開發에 寄與하기보다는 先進國과의 技術隔差만을 極大化시키는데 援用될 것이라는 憂慮에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우려가 完全히 排除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問題가 있다. 그 例로서 化學物質에 대한 특허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特許法과 先進國의 그것을 比較하면 두드러진 差異中의 하나가 化學方法에 의해 製造되는 물질의 發明을 특허하는지의 與否인데 우리나라는 다아는 바와같이 化學물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 理由는 化學물질 그 自體를 특허한다면 다른 사람이 보다 容易하고 經濟的인 製造方法을 開發하였다 해도 이를 實施할 수 없으니 工業發達을 阻害할 念慮가 있을 뿐만 아니라 化學技術水準이 낮은 우리나라의 現況으로서 새로운 물질을 發明하는 能力이 매우 貧弱하여 用途가 많고 優秀한 化學物質의 특허는 거의 全部가 外國人에게 獨占當할 것이 明白하기 때문이다. 事實 우리보다 技術水準이 높은 西獨에 있어서도 化學물질의 특허는 1968年 新特許法の 施行과 함께 처음으로 認定되었으며 日本 亦是 1978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물질특허를 認定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1958年 10月 리스본에서 開催된 파리協約改正會議에서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발명이 最大限度로 보호되어야 하는데 비추어 本會議는 各國이 그 國內法制에 있어서 新化學物質의 보호를 규정하는 일의 可能性을 檢討할 것을 勸告한다”고 決議했던 사실이 壓力으로서 作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1961年 第16次 UN總會에서 콜롬비아와 브라질이 공동으로 “發展途上國에서의 技術移轉에 있어서의 특허의 역할”이라는 議題의 決議案을 提出하였는데 그 결과로서 UN通商開發會議(UNCTAD)에서의 기술이전에 관한 國際的行動規範과 WIPO 및 UNCTAD의 파리協約改正에 관한 검토가 현재까지도 進行되고 있으며 아직 懸案으로서 남아 있다.

그렇지만 各國의 特許制度가 國際特許制度로 발전되

는 것이 추세이며 現實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前進的인 姿勢로서 여기에 對處할 수 있는 充分한 對備를 서두르는 것이 보다 賢明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우선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와 行政이 補充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審査, 審判의 迅速한 處理와 特許關聯技術資料의 蒐集整理流通에 있어서는 未洽한 點이 없지 않다. 또 80年을 目標로 하여 특허청에서 作業이 進行中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國際特許分類의 採擇, 信賴할 수 있는 微生物寄託機關의 指定에 의한 微生物寄託制度의 圓滑한 運用, 國內 特許資料의 電算化와 出願人別, 分類別, 技術用語別 檢索시스템의 確立, 여기에 덧붙여 專門審査 要員의 確保와 增員等은 一次的으로 해결되어야 할 整備事項이라고 본다.

둘째로는 기술開發의 촉진을 위한 組織的인 研究開發의 擴充이 필요하다. 발명이 個人의 創意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지만 특허로 출원되고 또 그것이 실사를 通過하여 등록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體系的인 研究開發의 成果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實情이다. 1978년에 우리나라에 出願公告된 762件의 특허를 보면 그中 93%가 外國인인 出願特許인데 出願人의 거의 대부분이 企業體이다. 이것은 그 특허가 企業體內의 研究開發部署 職員들의 職務發明임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출원은 그中 24%만이 企業이나 研究機關의 출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個人出願이다. 內國人的인 출원특허가 一般적으로 技術水準이 높지 않은 것으로 評價되고 있는 理由中의 하나는 조직적인 연구개발의 뒷받침이 적은 데 起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④ 結 言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經濟的인 側面에서 中進國의 上位圈에 들어갔을 뿐이지 기술수준이나 技術開發力水準에 있어서는 先進國과의 사이에 커다란 隔差가 尙存하고 있음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기술수준이나 기술개발력수준을 定量的으로 比較하려는 試圖에 있어서 特許登錄件數는 技術貿易額, 製造業附加價值額, 技術集約商品의 輸出額과 함께 同一比重을 갖는 기술수준의 指標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 기술수준과 研究開發資源의 投入量, 研究開發成果는 기술개발력수준의 指標가 되고 있다. 여기서 연구개발자원의 투입량은 研究費와 研究者數의 積의 函數이며, 研究開發成果는 國外에서 取得한 特許件數와 技術輸出額의 指數平均이다. 그러므로 先進國과의 기술격차를 縮少 내지는 解消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研究投資와 特許取得을 위한 技術人의 關心과 노력이 필요하다. ㉞